

# 입학사정관실운영에관한내규(개정 2013.02.12)

제 정	2010. 10.
개 정	2013. 2.
개 정	2014. 6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 국고지원 사업에 따라 본교 입학사정관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의 정의)**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책임 및 전임입학사정관”이라 함은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·자료를 축적·관리하며, 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·개발하고, 홍보에 참여하며 다양한 전형 자료를 심사·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며, 입학생 및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.
- ② “교수사정관”이라 함은 본 대학 교수 중 입학사정관제 정책 개발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③ “위촉사정관”이라 함은 “책임 및 전임입학사정관”과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하며 ‘내부위촉사정관’과 ‘외부위촉사정관’으로 구분한다.
- ④ “전환사정관”이라 함은 일반행정직에서 전환된 사정관을 말하며 연수를 통해 사정관제 입학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한다.
- ⑤ “학생부종합전형”이라 함은 학생의 학업능력과 인성, 창의성, 특기, 리더십, 봉사성 등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는 입학전형을 말한다.

**제3조(입학사정관의 범위)** 입학사정관은 “책임 및 전임입학사정관”, “교수사정관”, “전환사정관”, “내부 및 외부 위촉사정관” 이다.

## 제 2장 임 용

**제4조 (임용)** 입학사정관은 입학취업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**제5조 (채용절차)** 입학사정관의 채용은 전형과 학력, 경력,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하고 본교 일반직원인사규정 및 계약직인력관리지침에 따른다.

**제6조 (자격)** 입학사정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전임입학사정관 : 석사학위이상 소유자 및 교육 유경험자 또는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교육이수자(단 학교사정에 따라 학사학위 소지자를 임용 할 수도 있다)
- ② 교수사정관 : 대학입학사정관제 담당 교수로 별도 위촉한다.
- ③ 위촉사정관 : 내부위촉사정관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고 외부위촉사정관은 현직 교사 및 10년 이상 경력 퇴직 교사로서 공고를 통해 입학취업처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, 전환사정관은 입학취업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### 제 3장 운 영

제7조 (위원회) 본 제도를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 (복무 및 교육훈련)

- ① 입학사정관으로 임용 및 위촉된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, 공정한 전형 업무수행, 청렴유지 등 최고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입학사정관의 근무시간, 휴가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- ③ 입학사정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국내·외의 교육·훈련 등에 참가한다.

제11조 (준용) 입학사정관 운영에 있어 이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제규정 및 사정관제 운영 일반관례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내규 중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